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4.6. 박정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1. 4.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1.7.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1.8.17.) 상정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1.8.18.) 상정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3.5.31.) 상정, 축조심사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3.6.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3.6.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정 의원)

최근 운동선수, 연예인 등의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지고 학교폭력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음. 특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과 인터넷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2차 가해로부터 피해학생이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가 모호하고 해당 조치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해학생의 금지행위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범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도 금지함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에게는 사과, 전학, 퇴학 등 현행법에 따른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조치를 받은 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재유)

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보복행위 등 금지

개정안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에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보복행위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학생 및 학부모·교원 등의 이해를 돕고자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음.

나. 가해학생의 지속적 학교폭력 행사에 대한 조치의 병과 또는 가중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 이외의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별 세부적인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따라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 이외의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현행 입법체계(법률 - 시행령-교육부 고시)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판단하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하도록 할 것인지를,

개정안과 같이 관련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가해학생이 기존의 동일한 피해학생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하여 반복적·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입법 정책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다.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 의무화

개정안은 가해학생이 현행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조치를 받은 경우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5호1)는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가해학생이 현행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조치(피해학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의한 조치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중에서 “특별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를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영호 위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